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2
----------	------

2017년 8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8월 14일, 문영민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영민 의원)

가. 제안이유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변경함(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 근거 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 1. 25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¹⁾

-
- 1)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u>지진재해대책법</u>」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제21조-- ----- ----- -----.</p>